1 총칙

A 공유재산 일반

1-A-1 공유재산의 정의 및 범위

■ 정의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

■ 범위 요약(상세 사항은 1-C-1참조)

물건	부동산	토지, 건물, 입목
		토지의 정착물 (부속물·부합물 등)
		종물 (농가 주택의 창고 등)
	동산	선박, 부잔교, 부선거 및 항공기
		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기계
권리	용익물권	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광업권,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
	지식재산권	저작권, 특허권, 의장권, 상표권, 실용신안권
	유가증권	주식, 출자로 인한 권리, 사채권, 지방채증권, 국채증권 등
	수익권	부동산 신탁의 수익권
	배출권	온실가스 배출권